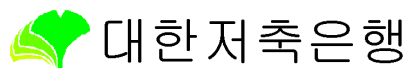


제51기 통일경영공시

(2022년1월1일 ~ 2022년12월31일)

본 자료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경영공시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저희 저축은행의 경영전반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의하여 그 정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또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현황】

1. 선 언 문

본 자료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저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의하여 그 정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 임 용 훈



2. 경영방침

(1) 경 영 이 념

공신력증대를 통하여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저축분위기와 저축증대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금융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 건전하고 모범적인 금융기관이 되도록 한다.

(2) 경 영 목 표

서민대중의 저축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건전 안전경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자금수요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여신업무체제를 갖추으로써 지역금융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한다.

(3) 경영기본자세

1. 친절한 자세
2. 지식경영의 자세
3. 절약하는 자세
4. 근면한 자세
5. 봉사하는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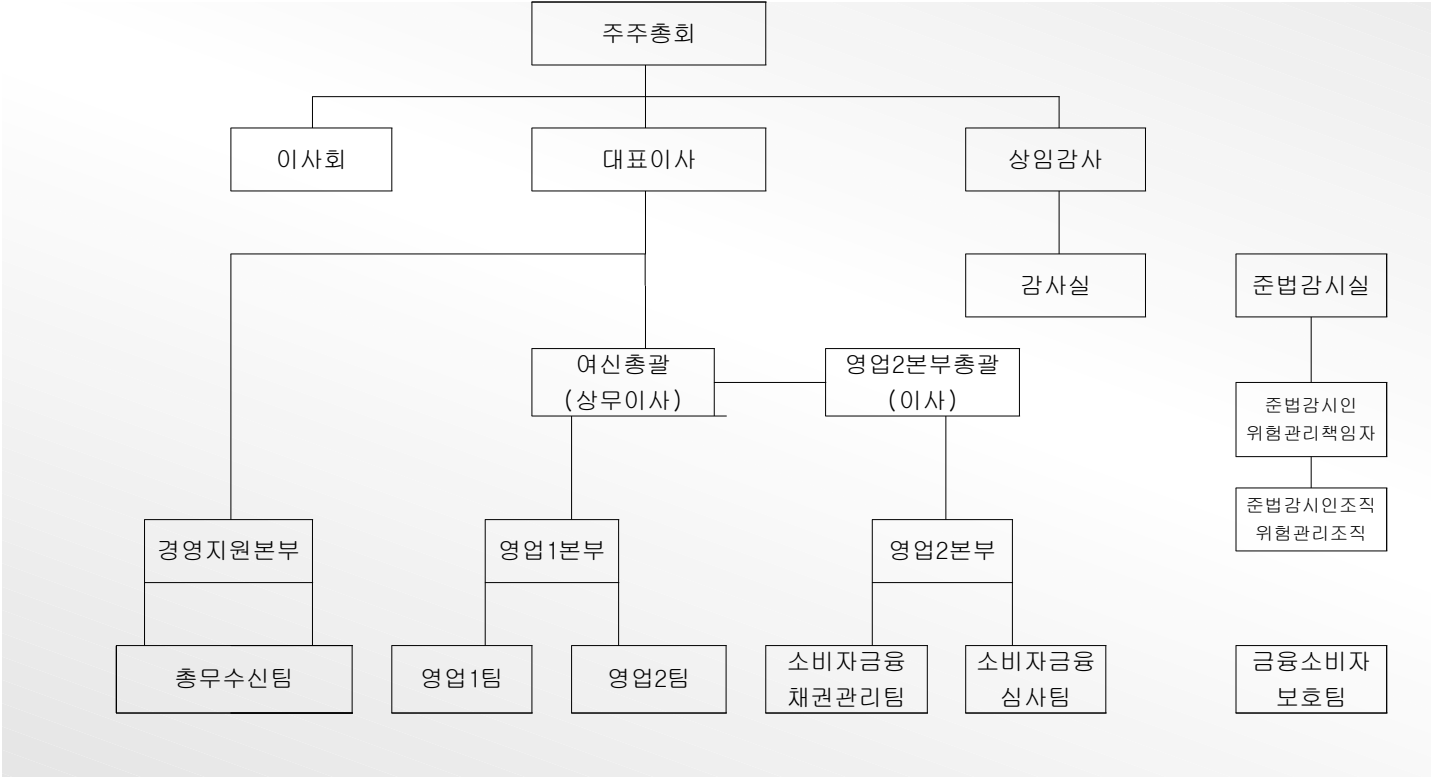
3. 연혁·추이

- ◎ 1972년 10월 회사 설립
- ◎ 1979년 10월 재무부장관 표장 수상(저축의날)
- ◎ 1981년 09월 대통령 새마을훈장 노력상 수상
- ◎ 1982년 02월 광주시 북구 누문동 사옥으로 이전
- ◎ 1983년 10월 경영권 이전(대표이사 이관진)
- ◎ 1984년 02월 재무부장관 표장 (조세의날)
- ◎ 1988년 03월 사옥증축 (사무실 확장)
- ◎ 1998년 11월 대표이사 이장훈 취임
- ◎ 2002년 03월 대한상호저축은행으로 사명 변경
- ◎ 2003년 11월 상무지점 개점
- ◎ 2010년 09월 대한저축은행으로 사명 변경
- ◎ 2014년 03월 상무지점 폐쇄
- ◎ 2019년 08월 대주주 (주)대광건영, (주)대광에이엠씨로 경영권이전 (대표이사 이평화)
- ◎ 2020년 01월 현대표이사 임용훈 취임

4. 조직

(1) 조직도

(2022.12.31.기준)



(2) 영업점 및 자동화기기

제51기 4분기말 : 2022년12월말 현재

영 업 점			자 동 화 기 기		
본 점	출장소	계	C D	ATM	기 타
1	-	1	-	-	-

5. 임직원수

* 직전분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분기):2022년12월말
제51기3분기말(직전분기):2022년09월말
(단위 : 명)

구 분		제51기4분기말 (금분기)	제51기3분기말 (직전분기)
임원	상근	6	6
	비상근 (사외이사 포함)	1	1
일반	정 규	27	26
	비 정 규	6	7
기 타		-	-
계		40	40

6. 임원현황

제51기4분기말 : 2022년12월말 현재

구 분	성 명	직 명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
상근임원	임 용 훈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황 일 두	감 사	상근 감사
	이 승 희	상무이사	영업 총괄
	노 기 환	이 사	소비자금융업무 총괄
	김 경 태	업무집행책임자	업무집행책임자
	임 경 석	업무집행책임자	여신업무총괄
사외이사	박 광 식	사외이사	사외 이사
사외이사가 아닌 비상근 이사	-	-	-

7. 동일계열회사

제51기말(금기) : 2022년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주, %)

회사 유형	법인명	업종	주소	임원현황		주주현황		관련법규
				직위	성명	성명	지분율	
비상장	(주)대광에이엠씨(AB)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55,701호	대표이사	김진형	조영훈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디케이레저	건설업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금산로 152	대표이사	김대웅	디케이랜드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디케이원	주택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57-3 (마북동)	대표이사	류희석	디케이랜드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디케이하우징	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 무 누 리 로 57-3(마북동)	대표이사	배진호	디케이월드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충남내포1PEV	금융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 동판교로 55, 701호	대표이사	정대준	디케이랜드	44.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대광건설(D)	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 무 누 리 로 57-3(마북동)	대표이사	안원선	디케이랜드	38.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대 광 건 영 (주)(A)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57-3 (마북동)	대표이사	조영훈/김남중	조영훈	78.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대광이앤씨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 동판교로 55,701호	대표이사	조영훈	(주)대 광 건 설	61.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덕원이앤씨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55,7층	대표이사	김경만	조영훈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디케이개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 무 누 리 로 57-3(마북동)	대표이사	조태석	조영훈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디케이랜드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광주광역시 북구 운 암 산 길 48,114-b108호	대표이사	정태원	조영훈	3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디케이물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	광주광역시 서구 상 무 누 리 로	대표이사	조영훈	조영훈	4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

	급업	57-3(마북동)					항제5호
(주)디케이에셋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마북동)	대표이사	김혁	최윤정	6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디케이플러스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 동판교로 55,702호	대표이사	조찬호	(주)대광에이엠씨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로제비앙건설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마북동)	대표이사	김인옥	디케이랜드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포레지아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산길 48,114-b106호	대표이사	김명준	(주)대광에이엠씨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대광로제비앙(주)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마북동)	대표이사	이승윤	조영훈	52.9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더원인베스트먼트(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 동판교로 55, 701호	대표이사	송덕래	최윤정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동공주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부동산업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28-3,3층	대표이사	명옥자	(주)대광건설	2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디케이월드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0, 1층102호	대표이사	송덕래	디케이랜드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에벌루션(주)	예식장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5	대표이사	강영철	(주)대광에이엠씨	47.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용인통삼엘씨주식회사	부동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숲로 45, 비동 313호	대표이사	김병희	(주)대광에이엠씨	4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용화도시개발주식회사	부동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b동313호	대표이사	전용현	(주)디케이원	5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장서엘씨PFV주식회사	부동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숲로 45, 비동 313호	대표이사	최종만	(주)디케이랜드	35.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제이에이치관광개발(주)	호텔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5	대표이사	강영철	(주)대광에이엠씨	47.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식회사 디케이로지스틱	창고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1층	대표이사	이지윤	(주)디케이물류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식회사 디케이솔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마북동)	대표이사	류희석	(주)디케이원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식회사 디케이전력	경영컨설팅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마북동)	대표이사	정태원	(주)디케이랜드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식회사 모비딕벤처스	금융 및 보험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 동판교로 55, 6층	대표이사	송문규	(주)대광에이엠씨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식회사 모비딕자산운용	금융 및 보험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15층1502	대표이사	진일정	(주)대광에이엠씨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식회사 헤리티지박스	운수 및 창고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 동판교로 55, 701호	대표이사	박병일	(주)디케이물류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1) “회사유형”에는 회사의 종류별로 주식회사는 ‘상장’, ‘비상장’으로 분류하고, 기타회사의 경우 ‘유한’, ‘합자회사’등으로 기재

2) “임원”은 등기부상 등기된 임원을 기록

3) “주주현황”은 지분을 상위 5대주주를 기재

4) “관련법규”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해당법규를 기재(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제4조제2항 참조)

8. 자본금

(단위 : 억원)

년월일	주식의 종류	발행주식수	증·감자 금 액	증·감자 내 용	증·감자후 자본금	비 고
2021.12.22	보통주자본금	64,316	3	유상증자	87	
2022.02.08	보통주자본금	64,316	3	감자	84	
2022.03.30	보통주자본금	64,316	3	유상증자	87	
2022.07.06	보통주자본금	64,316	3	감자	84	
2022.10.28	보통주자본금	128,632	6	증자	90	
2022.12.16	보통주자본금	128,632	6	감자	84	

주) 최근 3개년간의 자본금 증·감자내용 및 증·감자 후 자본금 금액임

9. 주요 주주현황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 주 명	소 유 주 식 수	소 유 비 율(%)
(주)대광건영	1,054,693	62.93
대한상호저축은행	449,859	26.84
(주)대광에이엠씨	171,508	10.23
합 계	1,676,060	100.00

10. 배당

구 분	2022회계년도	2021회계년도
보 통 주 배 당 율	-	-
보 통 주 주 당 배 당 액	-	-
주 당 당 기 순 이 익	-	-
배 당 성 향	-	-

[경영실적]

11. 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2022회계년도	2021회계년도
업 무 이 익(총당금적립전 이익) (A)	150	139
총 당 금 적 립 액 (B)	58	17
대 손 총 당 금	56	17
지 급 보 증 총 당 금	-	-
퇴 직 급 여 총 당 금	-	-
기 타 총 당 금	2	-
법 인 세 비 용 (C)	20	27
당 기 순 이 익 (A-B-C)	72	95

12. 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

(1)이자율 현황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분			제51기4분기말(금기)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			
			평균잔액		이자율	이자율	평균잔액		이자율	이자율
조달	원가성	예수금	4,069	88.55	126	3.10	3,056	89.23	75	2.45
		표지어음	-	-	-	-	-	-	-	-
		차입금	-	-	-	-	-	-	-	-
		기타	51	1.11	1	1.96	44	1.28	-	-
	소계	4,120	89.66	127	3.08	3,100	90.51	75	2.42	
무원가성	가성	자본총계	466	10.14	-	-	320	9.34	-	-
		충당금	-	-	-	-	-	-	-	-
		기타	9	0.20	-	-	5	0.15	-	-
		소계	475	10.34	-	-	325	9.49	-	-
조달합계			4,595	100	127	2.76	3,425	100	75	2.19
비용	수익성	예치금	615	13.03	15	2.44	556	15.82	5	0.90
		유가증권	36	0.76	1	2.78	43	1.22	7	16.28
		대출금	4,023	85.21	298	7.41	2,882	81.99	236	8.19
		기타	47	1.00	1	2.13	38	1.08	-	-
		대손충당금등(△)	△89	△1.89	-	-	△88	△2.50	-	-
		소계	4,632	98.11	315	6.80	3,431	97.61	248	7.23
	무수익성	가성	현형자산	2	0.04	-	-	1	0.02	-
유형자산			74	1.57	-	-	74	2.11	-	-
기타			13	0.28	-	-	9	0.26	-	-
소계			89	1.89	-	-	84	2.39	-	-
운용합계			4,721	100	315	6.67	3,515	100	248	7.06

(2) 만기구조

제51기4분기말 : 2022년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정상·요주의 분류자산 및 부채의 만기					고정이하 분류자산(C)	합계 (A+B+C)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3년 이하(A)	3년 초과(B)		
운 용		1,613	2,701	3,626	4,513	143	109	4,765
	대출금(1)	983	2,071	2,996	3,762	128	109	3,999
조 달		1,162	1,870	3,898	4,172	593	-	4,765
	예수금(2)	1,162	1,870	3,773	4,048	0	-	4,048
차이(1-2)		△179	201	△777	△286	128	109	△49

(3) 후순위채 발행현황

제51기4분기말 : 2022년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채권의 종류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액	발행금리	신용등급	비고
		해당사항없음				

13. 부문별 수지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도(A)	2021년도(B)	증감 (A-B)	
이 자 부 문	이 자 수 익	316	243	73	
	예치금이자	15	5	10	
	유가증권이자	1	2	△1	
	대출금 이자	299	236	63	
	할부금융이자	-	-	-	
	기타이자수익	1	-	1	
	이 자 비 용	107	61	46	
	예수부채이자	107	61	46	
	표지어음예수금이자	-	-	-	
	차입부채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	-	-	
소 계		209	182	27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5	6	△1
		수수료비용	11	16	△5
		소 계	△6	△10	△4
유가증권 부문		유가증권관련수익	1	6	△5
		유가증권관련비용	1	1	0
		소 계	0	5	△5
기타 부문		기타수익	4	18	△14
		기타비용	77	32	45
		소 계	△73	△14	59
부문별이익 합계		130	163	△33	
판매비와 관리비(△)		38	41	△3	
법인세 비용(△)		20	27	△7	
당기순이익		72	95	△23	

14. 자본적정성지표

(1) 자본적정성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분기말 (금기)	제50기4분기말 (전년동기)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 법규정상 요구되는 비율은 (5%)이상임	15,61	12.36
BIS기준기본자본비율	14,34	11.09
단순자기자본비율	12.44	9.78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 상호저축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BIS금융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산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에 따라 자기자본 보유를 의무화하는 “자기자본 측정과 적정 자기자본 수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의 하나로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내역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p)

구 분		제51기4분기말 (금기)	제50기4분기말 (전년동기)
기본자본계(A)		588	431
	자본금	84	87
	자본잉여금	105	16
	이익잉여금	408	337
	연결회사의 외부주주지분	-	-
	공제항목	△9	△9
보완자본계(B)		52	49
	상위 기한부 후순위 채무	-	-
	하위 기한부 후순위 채무	-	-
	재평가적립금	-	-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등	-	-
	대손충당금	52	49
경영정상화 장기차입금(C)		-	-
공제항목계(D)		-	-
자기자본계(A+B+C-D)		641	480
위험가중자산		4,104	3,884

15. 자산건전성 지표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분기(금기)	제50기4분기(전년동기)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7.15	6.64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1.13	1.43
고정이하 여신비율	2.73	2.22
연체대출비율	0.76	1.52

16. 수익성 지표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분기(금기)	제50기4분기(전년동기)
총자산순이익률	1.52	2.71
총자산경비율	0.80	1.16
수지비율	78.08	65.04

17. 유동성 지표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분기(금기)	제50기4분기(전년동기)
유동성 비율	155.94	120.91
예대율	96.37	93.63

◆ 유동성비율 : 단기조달자금에 대한 단기자금운용을 표시(상호저축은행의 지급능력)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 생산성 지표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분기(금기)	제50기4분기(전년동기)
직원1인당	총당금적립전이익	3.72	3.39
	예 수 금	100.97	74.54
	대 출 금	99.83	70.29
1영업점당	예 수 금	4,069	3,056
	대 출 금	4,023	2,882

19. 기타 지표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말(금기)	제50기말(전기)
퇴직급여 총당금비율	100%	100%

[재무상황]

20. 개 요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분기말 (금분기)		제50기4분기말 (전년동기)	
			구성비		구성비
자 산	현금 및 예치금	725	15.22	607	13.70
	유 가 증 권	49	1.03	37	0.84
	대 출 채 권	3,855	80.90	3,635	82.01
	유 형 자 산	73	1.53	74	1.67
	기 타 자 산	63	1.32	79	1.78
자 산 총 계		4,765	100	4,432	100
부 채	예 수 부 채	4,048	84.96	3,861	87.12
	차 입 부 채	-	-	-	-
	기 타 부 채	124	2.60	138	3.11
	부 채 총 계	4,172	87.56	3,999	90.23
자 본	자 본 금	84	1.76	87	1.96
	자본잉여금	105	2.20	16	0.36
	자 본 조 정	△2	△0.04	△7	△0.1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0.04	-	-
	이익잉여금	408	8.56	337	7.61
	자 본 총 계	593	12.44	433	9.77
	부채 및 자본총계	4,765	100	4,432	100

21. 대출금 운용

(1) 용도별 대출금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분기말(금기)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	
		구성비		구성비
기 업 자 금 대 출	2,821	70.54	2,785	74.62
가 계 자 금 대 출	720	18.00	650	17.41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458	11.46	297	7.97
합 계	3,999	100	3,732	100

(2) 담보별 대출금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분기말(금기)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	
			구성비		구성비
담 보	부 동 산	2,732	68.32	2,563	68.67
	동 산	-	-	-	-
	유가증권	-	-	-	-
	예 수 금	14	0.35	6	0.16
	기 타	733	18.33	646	17.31
소 계		3,479	87.00	3,215	86.14
보 증		-	-	1	0.03
신 용		520	13.00	516	13.83
합 계		3,999	100	3,732	100

(3) 중소기업 대출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분기말 (금기)	제50기4분기말 (전년동기)
중소기업대출	비율 (A/B × 100)	70.54	62.38
	중소기업대출(A)	2,821	2,328
	총 대 출 (B)	3,999	3,732

(4) 부동산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준수 및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제51기4분기말 : 202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업종명	신용공여 한도 준수 현황		건전성 분류 현황							
	한도 금액	신용 공여액	대출채권						연체액	연체율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합계		
부동산PF대출(①)	800	437	260	149	28	-	-	437	-	0.00
건설업(②)	1,200	395	365	30	-	-	-	395	-	0.00
부동산업(③)	1,200	769	519	230	20	-	-	769	-	0.00
합계(①+②+③)	1,999	1,601	1,144	409	48	0	0	1,601	0	0.00

(5) 소액신용대출 취급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2022년 12월말 (금기)	2022년 09월말	2022년 06월말	2022년 03월말
총 대 출	3,999	3,973	4,232	4,056
소액 신 용 대 출	8	7	7	8
비중	0.20	0.17	0.16	0.19
소액 신용대출연체액	1	1	1	1
비중**	0.02	0.02	0.02	0.01

- 주 1) 총여신중 3백만원 이하의 신용대출금액을 분기별로 기재
- 2) 연체기준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의 연체여신 정의 적용
- * 소액신용대출잔액이 10억원이하인 저축은행은 “소액신용대출 취급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소액신용대출연체액 비중은 소액신용대출연체액을 총대출로 나눈 값

22. 유가증권투자 및 운용현황

제51기말(금기) : 2022년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취득원가	기말장부가액	평가손익잔액(B/S)	운용손익(I/S)
당기손익인식증권	2	1	-	-
매도가능증권	30	28	-2	1
만기보유증권	20	2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합 계	52	49	-2	1

23. 예수금 현황

(1) 형태별 예수금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분기말(금기)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	
	잔 액	평균잔액	잔 액	평균잔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요구불예금	88	2.17	70	1.72	104	2.69	115	3.76
거치식예금	3,905	96.47	3,913	96.17	3,659	94.77	2,827	92.54
적립식예금	55	1.36	86	2.11	98	2.54	113	3.70
표지어음	-	-	-	-	-	-	-	-
기 타	-	-	-	-	-	-	-	-
합 계	4,048	100	4,069	100	3,861	100	3,055	100

(2) 예금자별 예수금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 분기말(금기)		제50기4 분기말(전년동기)	
		구성비		구성비
개 인	3,912	96.64	3,659	94.77
법인 및 단체	136	3.36	202	5.23
기 타	-	-	-	-
합 계	4,048	100	3,861	100

주) 잔액기준

24.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1) 대손상각액

* 전년동기대비

제51(금)기 4분기(3개월) : 2022년10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제51(금)기 누계 : 2022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제50(전)기 4분기(3개월) : 2021년10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제50(전)기 누계 : 2021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단위 : 억원)

구 분	제51기4분기말(금기)		제50기4분기말(전기)	
	금분기	누계	전년동기	누계
기 중 대 손 상 각 액	12	44	-	32
일 반	12	44	8	32
특 별	-	-	-	-

(2) 대손충당금내역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분기말(금기)	제50기 4분기말(전년동기)
대 손 충 당 금	139	92
일 반	139	92
특 별	-	-

25. 부실 및 고정이하 분류여신 현황

(1) 부실 및 고정이하분류여신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51기4분기말(금기)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
총 여 신	3,999	3,732
부 실 여 신	44	30
고정 이하 분류 여신	109	83
순고정이하 분류여신	44	52

- 주1) 부실여신은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여신의 합계임
2) 고정이하분류여신은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여신의 합계임
3) 순고정이하분류여신은 고정이하분류여신에서 고정이하 총당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임

- ◆ **부실여신** :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총여신 대비 그 비율이 낮을수록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 **고정이하분류여신** :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중 고정,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총여신 대비 그 비율이 낮을수록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 고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등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2) 거액 부실여신 증가업체 현황

* 직전분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1기3분기말(전분기):2022년09월말
(단위 : 억원)

업체명 ¹⁾	제51기4분기말 (금분기)	제51기3분기말 (직전분기)	증가액	증가사유	비 고
	해당사항없음				

- 주1) 업체명은 직전분기대비 부실여신잔액이 10억원 이상 증가업체를 대상으로 상위 20개 업체를 기재하되,
법인의 경우 "(주)***(업종)", 개인명의대출의 경우 업체명에 "개인대출(홍*동)"으로 기재

(3) 신규발생 채권재조정업체 현황

제51기4분기말 : 2022년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업 체 명	채권재조정 결정일자	제51기4분기말 총여신잔액	부실여신잔액	채권재조정 진행내역	비 고
	해당사항없음				

- 주) 총여신잔액이 10억원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작성함

26. 주석거래

* 전년동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제51기4분기말(금기)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
지급보증	-	-
대손상각채권	77	82
배서어음	-	-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	-
파생금융상품 거래	-	-

27.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현황

제51기4분기말 : 2022년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1년내 취득분	1~3년내 취득분	3년 이전 취득분
비업무용 토지	-	-	-
비업무용 건물	-	-	-
합 계	-	-	-

27-1. 겸영업무 취급현황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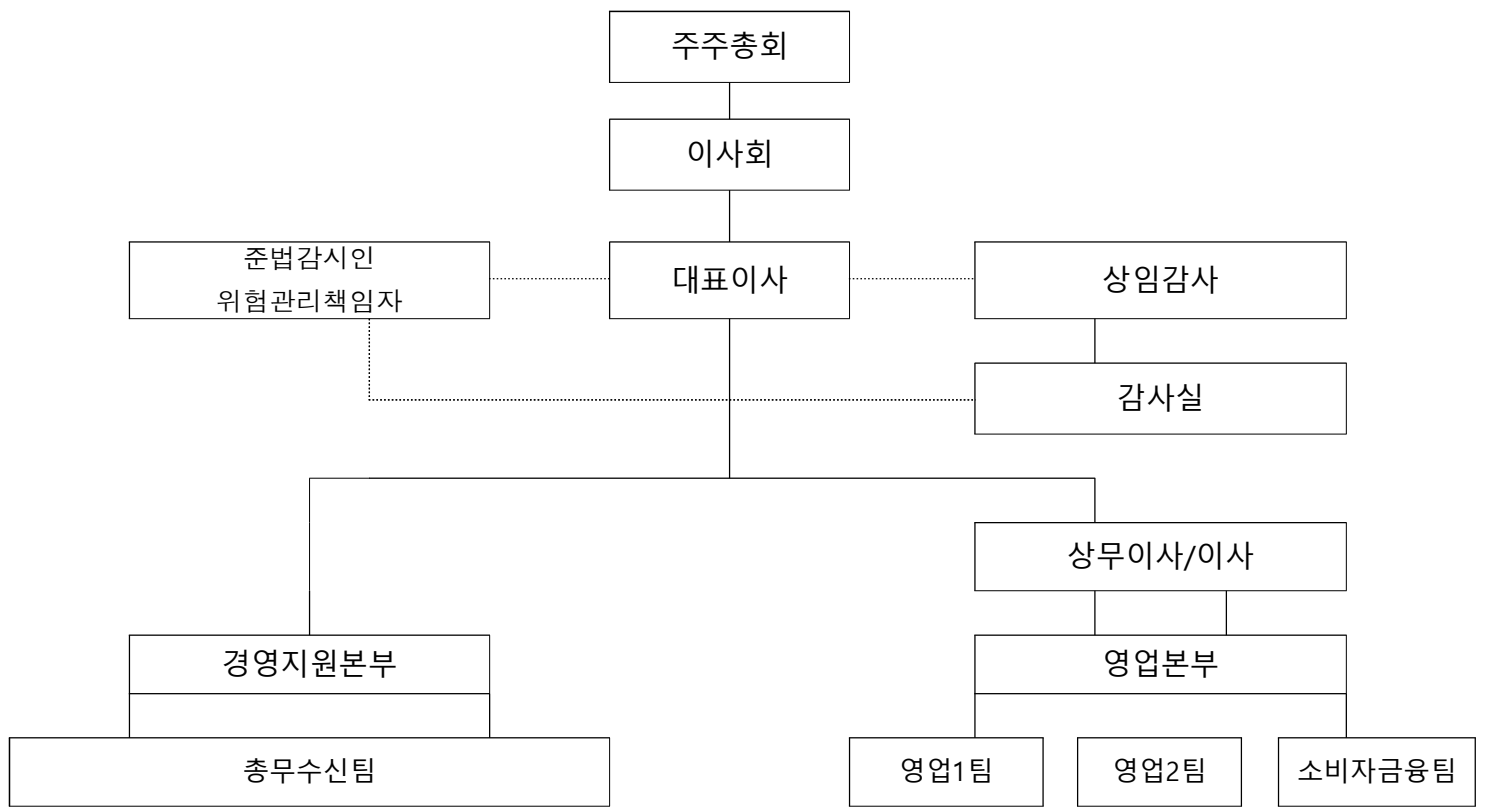
제51기4분기말(금기):2022년12월말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2021년12월말
(단위 : 억원, 건, 매)

구 분	제51기4분기말(금기)		제50기4분기말(전년동기)	
	실 적	건(매)수	실 적	건(매)수
할부금융	-	-	-	-
체크카드	1	2,084	1	2,323

[위험관리]

28. 개 요

(1) 리스크 관리조직



(2) 리스크 관리체계

○목 적 - 우리 저축은행의 위험관리 전략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신용, 시장, 유동성, 금리” 위험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이사회로부터 실무부분까지 Top-down으로 부여된 책임과 역할이 통일된 체제수행에 있으며 위험 관리조직의 체계화, 선진위험 관리 관리기법의 지속적인 개발 및 위험 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험자산과 목표이익을 적정분배함으로써 경영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관리 원칙 - 우리 저축은행은 각종 위험관리를 전반적인 영업성과를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하에 위험관리를 한다.

기 본 원 칙	내 용
전사적 위험관리체제 구축	효율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전사적 책임은 최고경영층에서부터 일선영업부서까지 체계적으로 구축
영업부서의 활동과 위험관리 조직의 통제	영업부서의 영업활동 자율성은 최대한 부여하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선 영업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은 위험관리조직에서 집중관리
명확한 책임과 한계	담당자별, 취급상품별, 거래별 등 필요한 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의 실행관계자에게 명확히 부여하고 그에 따른 한도내에서 책임을 부담
위험자산의 분산화	특정자산, 특정지역, 특정업종, 특정거래처 등에게 자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자산 및 업무의 분산화 도모
위험관리의 내부모형 구축	회계처리방법 또는 사내·외 모든 거래에 대한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구축하고 위험을 고려한 수익과 자기자본 배분

(3) 신용리스크 관리

[용어정리]

1. “신용위험” 이라함은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융자 및 채권매입 등의 형태로 자금을 공여하거나 미래의 일정시점에 기 확정된 가격으로 교환이 약정된 계약(예 : 선물환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손실을 말한다.

2. “신용등급” 이라함은 당사가 신용을 공여하는 기업의 신용상태를 그 상태에 따라 일정한 기호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3. “신용평가” 라함은 재무자료, 영업활동, 경영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측정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함을 말한다.
4. “신용심사” 라함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종합판단하고 신용한도, 거래조건, 심사유효기간 등을 결정함을 말한다.
5. “총한도” 라함은 일정기간 이내에 공여할 수 있는 대출, 채권매입, 보증 등의 합계액의 한도를 말한다
6. “심사유효기간” 이라함은 신용등급, 한도, 거래조건에 관하여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을 말한다.
7.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이라 함은 미래의 특정시점을 만기로 하여 체결된 외환과 채권같은 자산의 교환계약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하여 무효화되었을 경우 당사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말한다. 이 손실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만기가 갈수록 커진다.

[관리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신용위험의 관리를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① 거래상대별 적용대상 개인고객
법인고객
제휴점
 - ② 운용주체별 적용대상 단기자금운용(MMF 등 만기 3개월 이내)
기자금운용(예적금 등 만기3개월 초과) 주식, 채권

[관리주체]

1. 거래상대별 신용위험의 관리주체는 영업팀이며 영업팀내 전담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업팀은 일정기간마다 신용위험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산하 지점에 전달하고 지점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신용등급 판정]

1. 거래상대별 신용등급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관리주체(영업팀)는 해당 거래상대에 대하여 당사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 및 외부 전문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한다.
 - ② 해당 거래상대의 신용등급은 필요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향후 신용등급의 변동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표시한다.
 - ③ 관리주체(영업팀)는 해당 거래상대의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마다 지속적으로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운용주체별 신용등급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관리주체(지원팀)는 당사 신용등급 및 외부전문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운용주체(취급 금융기관 포함)별 투자적격여부, 최대운용한도, 운용기간, 포트폴리오의 구성기준 등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련임원 및 위험관리실무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①호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 대하여 관련임원 및 위험관리실무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관리주체(지원팀)는 해당 운용주체(취급 금융기관 포함)의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담당 부서에 요청하고 결과를 문서로 수령한다.
 - ④ 제③호의 평가결과 급격한 신용등급의 변화 등 돌발사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여 손실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3. 당사 자체적인 신용등급과 외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자산운용]

1. 자산운용시 투자적격은 외부 신용등급 BBB- 이상 또는 CP등급 A3- 이상으로 한다.
2. 외부 신용등급 BB+그룹 공통기준상의 “관찰대상”)이하 또는 CP등급 B+이하 등급에 대해서는 신용등급별로 운용한도 등을 별도로 설정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2항에서 설정된 한도이내에서의 운용은 해당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실행하되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문서화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4. ① 법인대출과 관련하여 타 법인이 보증인으로 입보되는 건은 대출을 받는 법인과 보증인의 신용등급을 모두 파악한다.
 ② 양자의 신용등급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보증인측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쪽의 신용 등급을 적용한다.
5. 자산 운용 시 신용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룹 내 공통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요구 비율을 적용한다.

구 분	당기 총당금 설정기준		
	PF대출채권	기 타	
정 상	2%이상(*)	기업 0.85% 개인 1.00%	
요 주 의	10%이상	기업 7.0% 개인 10.0%	
고 정	30%이상	20%이상	
회수의문	75%이상	기업 50% 개인 55%	
추정손실	100%	100%	

(*) 취급후 1년 이상 경과한 정상분류인 대출은 3% 이상

주 1)PF의 정상자산은 최초 취급 후 1년 미만의 대손충당금 설정요구 비율을 적용한다.

2)PF의 요주의 자산은 PF대출 중 프로젝트가 아파트인 PF대출의 대손충당금 설정요구 비율 이다.

[보고]

1. 규정 제15조 각 항에서 명시한 신용위험 관리주체는 신용위험 관리내역 및 그 결과를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매월 개최되는 위험관리위원회 정기 회의시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보고를 위한 자료는 그룹 보고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자료는 매월 본사의 위험관리전담부서로 전송해야 한다.
3. 신용위험 관리주체는 보고자료 작성 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당월내역 및 전월대비 변동 내역을 작성한다.
 - ①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별 신규취득액 및 변동상황
 - ② 요주의 및 관찰대상자산의 신규취득액 및 변동상황
 - ③ 투자부적격 자산의 취득내역
 - ④ 부실자산 현황 및 예상부실액
 - ⑤ 기타 신용등급의 급격한 변화 등이 예상되는 자산내역 등

(4) 시장리스크 관리

[용어 정의]

1. “시장위험”이라 함은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변동에 의한 채권가격 변동 및 주가, 환율 등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손실을 말하며 금리변동에 대한 순이자이익 변동 및 순자산가치 변동은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한다.
2. “운용한도”라 함은 운용부서 및 운용담당자에게 주어진 투자한도를 말하며 현물주식이나 채권투자에서는 투자금액을, 파생상품이나 선물환거래에서는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손실한도”라 함은 시장위험의 증가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자이익을 지속적으로 확

보호하기 위해 시장성 자산에 허용된 최대한의 손실허용 수준을 말한다.

4. “손절매”라 함은 상기 손실한도를 지키기 위해 손실한도를 초과한 거래나 종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략투자”라 함은 투자의사결정이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말한다.

[관리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시장위험 관리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규정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적절한 투자한도를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이익 확보 및 당사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시장위험의 관리 적용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신상품이라함은 규정 제2조 3항에서 정의된 신상품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주식
 - 채권
 - 파생상품
 - 신상품

[관리주체]

시장위험의 관리는 지원팀이 담당한다.

[운용 및 손실한도]

1. 운용 및 손실한도는 매입가격의 20% 이내에서 규정 제25조의 관리주체가 상품별로 별도 설정하여 문서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단, 전략투자는 운용 및 손실한도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2. 상기 1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운용 및 손실한도상에 변경내역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유 등 관련사항을 문서화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주식]

1. 보유주식의 평가는 시가 또는 장부가로 평가하고 시가평가는 매일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시가평가 대상은 상장주식과 KOSDAQ주식으로 한다.
3. 장부가 평가대상은 비상장주식으로 한다.
4. 손실한도의 산출은 매입가 대비 시가의 하락율로 하며 손실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주식은 당일 중 반대매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상기 4항의 반대매매 대상주식중 불가피한 사유로 반대매매가 불가한 경우에는 상세내역과 사유를 문서(반대매매 유보 신청서)로 작성하여 위험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6. 승인이 된 건은 1회에 한하여 반대매매를 유보할 수 있다.

[채권]

1. 보유채권의 평가는 시가 또는 장부가로 하며 시가평가의 경우에는 매일단위로 채권시장의 평가결과를 수신한다. 시가 평가의 대상 : 국채, 공채(특수채 포함), 회사채(금융채 포함), 전환사채, 개발신탁수익증권
2. 시가평가는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대표가격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가방식은 관리주체인 지원팀에서 설정한다.
3. 평가손익은 보유채권의 종목별 장부가와 2항의 시가와와의 차이로 한다.
4. 손실한도를 초과하는 건은 보유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반대매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상기 4항의 반대매매 대상채권 중 불가피한 사유로 반대매매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와 추가 보유기간을 문서(반대매매 유보 신청서)로 작성하여 위험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6. 승인이 된 건은 1회에 한하여 반대매매를 유보할 수 있다.

[파생상품]

1. 파생상품은 거래목적에 따라 헷지거래, 자산배분거래, 재정거래, 투자거래로 구분한다.
 - ① 헷지거래는 기 보유 또는 장래에 보유할 주식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지수선물 또는 옵션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 ② 자산배분거래는 유동성의 확보를 위하여 현물주식의 매도가 불가피한 경우 지수선물 또는 콜옵션을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 ③ 재정거래는 현물선물간, 선물옵션간 또는 현물간의 가격불균형을 이용하여 최소위험하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 ④ 투자거래는 파생상품 가격의 등락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거래를 말한다.
2. 손실한도를 초과하는 건은 당일 중 반대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상품 및 기타]

- 신상품에 대한 투자는 아래의 항목을 검토하고 진행시켜야 한다.
 - ① 거래상에 내재되어 있는 시장, 신용, 금리, 사무 등의 위험을 파악
 - ② 측정가능한 위험의 계량화
 - ③ 위험대비 수익의 적절성 평가
 - ④ 운용한도 및 손실한도 설정
 - ⑤ 회계처리 방법
 - ⑥ 기타 법률 및 감독규정 관련사항 등
- 상기 2항의 제 항목에 대한 검토결과는 문서화하여 담당임원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신상품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

(5) 유동성리스크 관리

<정기예금 등의 잔존기간별 잔액>

○ 정기예금

(단위 : 억원)

구 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합 계
정기예금	3,549	356	-	-	3,905

○ 대출금

(단위 : 억원)

구 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5년초과	합 계
대출금	2,869	548	217	120	240	5	3,999

주)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에 대하여 약정기간을 정하고 특정기간(1개월 등) 안에 회전 취급하는 대출금은 한도약정기간에 불구하고 1년 이내로 분류함.

○ 유가증권

(단위 : 억원)

구 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5년초과	합 계
국·공채	-	20	-	-	-	-	20
사 채	10	9	9	-	-	-	28
기 타	1	-	-	-	-	-	1
합 계	11	29	9	-	-	-	49

주 1) 국·공채란 통화안정증권, 정부보통채, 재정증권국채, 지방채, 정부투자기관발행채권 등을 말함

2) 유가증권의 만료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주식 및 투자유가증권(출자금 포함) 등은 제외함.

(6)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

1) 개요

개인,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인적사항과 소득 현황, 재무상태, 금융기관 거래정보, 신용도 등의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점수화해 이 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액 및 적용금리 등을 결정해 신속하게 알려주는 자동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즉, 나이·직업·소득 등 신상정보와 기타 은행거래정보 등을 이용, 고객의 신용도를 컴퓨터로 자동 계산하여 돈을 빌려줄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빌려준다면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지를 컴퓨터를 통해 판단하도록 한 툴이다.

2) 적용현황

현재 당행은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이나 고객의 대출 요청시 대출적격 여부와, 대출 가능금액 등의 산정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이용신청자의 소득 현황, 재무상태, 금융기관 거래정보,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기타경영현황]

29. 자회사 경영실적

제51기4분기말 : 202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자회사명	재무상황		손익상황		결 산 기준일
	총자산	자기자본(자본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해당사항없음				

30. 여·수신 금리현황 및 결정체계

(1) 여신금리

(2022년 12월 31일 현재)

구 분			신용등급별 ¹⁾ 현황			비 고
			최상위 등 급	최다 차주 해당등급	최하위 등 급	
개인대출	신용대출 (무보증, 1년)	등급	10분위	1분위	1분위	금리산정시 평점미반영
		적용금리	18.50	17.39	17.39	
	아파트담보대출 (1년)	등급				
		적용금리		6.00		
	예금담보대출 (정기예금1년)	등급				
		적용금리		4.38		
기업대출 ²⁾	기업일반대출 (1년)	등급				기업등급 미반영
		적용금리		6.93		
	당좌대출	등급	-	-	-	
		적용금리	-	-	-	

주) ① 개인신용평점 순위 : 10분위(상위 0~10%=상위10%) ~ 1분위(상위90~100%=하위10%)

② 정상등급을 대상으로 함

③ 무보증대출 기준

(2) 수신금리

(2022년 12월 31일 현재)

구 분	기 간	최저금리 ¹⁾	최고금리 ²⁾	비 고
보통예금	-	0.1	0.1	
저축예금	-	-		
정기적금	6개월	2.1		

	1년	5.2		
	2년	5.1		
	3년	3.6		
정기예금	3개월	1.2		
	6개월	5.1		
	1년	5.3		
	2년	3.8		
	3년	-		
근로자우대저축	3년	-		
	5년	-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		

주) ① 기본고시금리 기준
 ② 일반우대금리 기준

(3) 금리 결정체계

1) 수신

시장금리, 단기자금시장전망, 당행의 자금구조 및 운용상황, 타행금리수준, 수신취급비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금리결정.

2) 여신

수신금리에 일정 spread 가산(3%~8%)하고 수수료, 여신업무수행에 따르는 업무원가를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이사회에서 최종금리 결정.

31.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조 달		운 용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국 내 은 행	-	-	보통예치금 (농협,	2
기타금융기관	-	-	기타예치금	58
소 계	-	-	소 계	60
중 앙 회	-	-	중앙회예치금	505
	-	-	지급준비예치금	159
합 계	-	-	합 계	724

주) 거래 금융기관을 별도로 명시

32. 준법감시인 제도

1) 준법감시인의 개념

□ 준법감시(Compliance)란 일반적으로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장치로 금융회사에 있어서 준법감시기능(Compliance)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으로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룸

2) 역할

- 1)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기획·입안
- 2) 법규준수프로그램의 수립 및 변경
- 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미비점 개선·시장
 - 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 나. 필요시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조사 및 감사위원회 앞 보고와 제재요구
 - 다. 내부통제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4)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5)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준법심사
 - 가. 정관·내규의 제정 및 개정
 - 나. 계약의 체결 및 변경
 - 다. 국내외 출자에 관한 사항
 - 라.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 마.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감사위원회 소관업무와 회계 및 재무관련 보고서는 제외)
 - 바. 기타 이사회, 이사회소속위원회(감사위원회제외) 부의사항
- 6) 내부통제와 관련한 임직원 교육 실시
- 7) 임직원 윤리강령의 실천방안 마련
- 8)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 가. 감독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의사소통채널 구축
 - 나. 연간 감사계획 수립시 감사위원회와의 협조·조언 등
- 10) 준법감시활동결과에 대한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앞 보고
- 11) 기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3) 운영현황

준법감시인 1명

33. 내부통제

1) 감사의 기능과 역할

(1) 감사의 직무 :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 ②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③ 내부감사부서장(준법감시인)의 임면에 대한 동의
- ④ 외부감사인 선임의 제청
- ⑤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⑥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⑦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 ⑧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2) 감사의 방법

감사 및 감사인은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일상감사 :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반대의견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동 건에 대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감사 :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능별 프로세스의 유효성 평가, 문제점 적시, 개선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 종합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내부감사부서 검사방향

- ① 부서별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 ② 사업부서별 영업계획·전략 수립 프로세스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 ③ 영업상 회계시스템 및 기준 변경 등의 준법성 및 적정성 여부
- ④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 ⑤ 부서별 업무 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 ⑥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 ⑦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 ⑧ 조직구조상 내부건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3) 감사빈도

- ① 일상감사 : 수시
- ② 정기감사 : 연1회 실시
- ③ 특별감사 : 분기1회

4) 감사조직(인원, 경직 등) 및 활동내역

당행은 별도의 감사조직으로서 상근감사 부속조직으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 감사의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사항을 일일 일상감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부서장에 해당하는 감사실장은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상시모니터링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5)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세부운영기준 운영실적

(1) 여신심사위원회

여심위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여신 취급·심사·사후관리, 여신감리 등 여신 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은 여심위의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정하고, 그 직책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여심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여심위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여심위의 안전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통할하여 여심위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심의·의결 대상 여신은 저축은행의 여신규모, 신용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여심위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최근 3개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평균금액이 1조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담보여신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여신과 신용여신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여신은 심의의결대상 여신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3개 사업 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평균금액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담보여신의 경우 20억원 이상의 여신과 신용여신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여신은 심의의결대상 여신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감리부서

여신감리부서는 여신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여신감리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신으로 한다.

1.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여신
2. 부실채권(감리부서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여신감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2. 여신심사 및 승인의 적정성
3. 여신약정 준수여부
4. 여신관련 법규 및 내규준수 여부
5. 여신사후관리의 적정성
6. 여신담당자의 문제여신 식별의 정확성 및 시의성
7. 기타 여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4.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사항

- 해당사항없음

34-1. 민원발생 건수<신설 2016. 8.22.>

※ 동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 질의성,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 등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용·활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민원건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대상기간

- 금 분기 : 2022년 4분기(2022.10.01.~2022.12.31)

가. 민원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³⁾ (고객 만명당 건)			비고
	2022년 3분기 (전분기)	2022년 4분기 (금분기)	증감률 (%)	2022년 3분기 (전분기)	2022년 4분기 (금분기)	증감률 (%)	
자체민원 ¹⁾	-	-	-	-	-	-	
대외민원 ²⁾	0	3	100	0	1.47	100	
합 계	0	3	100	0	1.47	100	

주1) 서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

주2)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 요청한 민원. 단, 해당기관(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실 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주3) 환산 건수 = (전체 민원 건수 / 전체 고객 수)×10,000

나. 유형별 민원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고객 만명당 건)			비고
		2022년 3분기 (전분기)	2022년 4분기 (금분기)	증감률 (%)	2022년 3분기 (전분기)	2022년 4분기 (금분기)	증감률 (%)	
유 형	수 신	-	1	100	-	0.49	100	
	여 신	-	2	100	-	0.98	100	
	채권추심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1	100	-	1.47	100	

다. 상품별 민원건수<신설 2017. 4. 17.>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고객 만명당 건)			비고
		2022년 3분기 (전분기)	2022년 4분기 (금분기)	증감률 (%)	2022년 3분기 (전분기)	2022년 4분기 (금분기)	증감률 (%)	
상 품 별	예·적금 주1)	-	1	100	-	0.49	100	
	주택담보 대출	-	-	-	-	-	-	
	신용대출	-	2	100	-	0.98	100	
	방카 슈랑스	-	-	-	-	-	-	
	기타	-	-	-	-	-	-	
	합 계	-	3	100	-	1.47	100	

주1) 계, 부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 수신상품 포함

35. 수시공시 사항

- 직전 사업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30%이상 변경사실 (20220323)
- 주주총회개최 관련사항 (20220323,20221026)
- 임원선임공시(20220104,20220323)
- 임원사임공시(20220323)
- 유상증자결정(20220316,20221011)
- 감자결정(20220316,20221011)
- 사외이사가아닌이사회의장선임사유(20220325)

36. 직원대출 잔액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직원대출 잔액	-	-

37. 대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내역

가. 신용공여¹⁾현황

* 직전분기대비

제51기4분기말(금분기):2022년12월말
제51기3분기말(직전분기):2022년09월말
(단위 : 백만원, %)

주주(또는 임원)명 ²⁾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명 ³⁾	선임당시 신용공여 (A)	제51기3분기말 (직전분기) 신용공여(B)	제51기4분기말 (금분기) 신용공여(C)	증 감(증감율)	
					선임일 대비(C-A)	전년동기 대비(C-B)
주 주	()	본 인			()	()
		특수관계인			()	()
		소 계			()	()
	()	본 인			()	()
		특수관계인		해당사항없음	()	()
		소 계			()	()
	합 계	본 인			()	()
		특수관계인			()	()
		소 계			()	()
	임 원	본 인			()	()
	()	특수관계인			()	()
		소 계			()	()
	()	본 인			()	()
		특수관계인			()	()
		소 계			()	()
	합 계	본 인			()	()
		특수관계인			()	()
		소 계			()	()
총 계		본 인			()	()
		특수관계인			()	()
		계			()	()

- 주)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신용공여를 말함
② 주주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대상으로 함. 임원의 경우에는 ()에 선임년월과 직위(저축은행장, 사외이사 등)를 명시함. 신용공여가 없는 주주 및 임원의 경우에는 신용공여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함
③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주(또는 임원)의 특수관계인임

나. 기타 주요 거래내역

(1) 부동산 매매 현황¹⁾

제51기4분기말 : 2022년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주주(또는 임원)명 ²⁾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명 ³⁾	거래구분 (매수/매도)	계약일자	거래액	비 고
주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주	본 인				
	특수 관계인			해당사항없음	
	소 계				

임 원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총 계		본 인					
		특수관계인					
		계					

주) ① 당해 회계연도중(2022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과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내역을 대상으로 작성함

②, ③ 양식 '가'의 해당 각주와 동일

(2) 부동산 임대차 현황¹⁾

제51기4분기말 : 2022년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주주(또는 임원)명 ²⁾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명 ³⁾		거래구분 (임대/임차)	계약 체결일	계약 종료일	임대차 거래액		비고
							보증금	연 간 임대(임차)료	
주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주		본 인							
		특수 관계인		해당사항없음					
		소 계							
임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원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총 계		본 인							
		특수관계인							
		계							

주) ①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과 이행중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작성함

②, ③ 양식 '가'의 해당 각주와 동일

(3)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등 현황¹⁾

제51기4분기말 : 2022년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주주(또는 임원)명 ²⁾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명 ³⁾		거래내용 ⁴⁾	거래일자	물품공급(또는 용역계약)액	비 고
주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주		본 인					
		특수 관계인		해당사항없음			
		소 계					
임		본 인					

원		특수 관계인					
		소 계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총 계			본 인				
			특수관계인				
			계				

- 주) ① 당해 회계연도중(2022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 등을 대상으로 작성함
- ②,③ 양식 '가'의 해당 각주와 동일
- ④ ○○물품공급, ○○용역계약 등으로 표시함

(4) 주식거래 현황¹⁾

제51기4분기말:2022년12월말 현재 말
제50기말(전기):2021년12월말
(단위 : 백만원, 천주)

주주(또는 임원)명 ²⁾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명 ³⁾	제50기말 (전기)		매 수		매 도		제51기 4분기말현재		비고
			B/S상 잔액	보유량	거래 금액	거래 수량	거래금 액	거래수 량	B/S상 잔액	보유량	
주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주		본 인									
		특수 관계인			해당사항없음						
		소 계									
임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원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총 계		본 인									
		특수관계인									
		계									

- 주) ① 당해 회계연도중(2022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한 거래(장기투자목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한 거래를 제외함)를 대상으로 작성함
- ②, ③ 양식 '가'의 해당 각주와 동일

38.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황

(단위 : 백만원)

주주구분	대주주명	발행회사		전분기말 보유현황				취득내역					처분내역					분기말 보유현황					
		회사명	대주주와의관계	주식수	지분율	취득금액(A)	시가	취득일자	취득주식수	취득목적	취득방법 ²⁾	1주당취득가액	취득금액(B)	처분일자	처분주식수(C)	처분방법 ²⁾	1주당처분가액(D)	1주당취득금액(E)	1주당장부가액(F)	처분손익 {C*(D-F)}	주식수	지분율	취득금액 (A+B-C*E)

[illegible]

주1) 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여부를 기재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을 구분기재

* 참고조문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의3

3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현황

(단위 : 주, 원)

부여 받은자	관계	부여일	부여 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수량	행사 기간	행사 가격	종가
					부여	행사	취소				
				해당사항없음							
합 계	-	-	-	-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 (1) 행사가격
(2) 행사수량
(3) 기 타

다. 연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행사 및 취소

- (1) 부여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일	직위	성명	주식의 종류	기부여 주식수	부여 주식수	행사 기간	행사 가격	행사 조건	부여시 현재가치	발행 주식 총수	총 주 부 여 한 도
				해당사항없음							

(나) 이사회 결의

부여일	직위	성명	주식의 종류	기부여 주식수	부여 주식수	행사 기간	행사 가격	행사 조건	부여시 현재가치	발행주식 총수	이사회 결의 부여한도
-----	----	----	-----------	------------	-----------	----------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2) 행사

행사일	직위	성명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잔여 주식수	부여시 행사가격	최종 행사가격	행사시 주가	행사 이익
				해당사항없음						

(3) 취소

취소일	직위	성명	주식의종류	부여주식수	취소주식수	잔여주식수	취소사유
				해당사항없음			

40. 상품이용시 유의사항

- 1) 상호저축은행거래는 실명에 의하여 합니다.
- 2)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우리 상호저축은행의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후에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3) 대출의 이용은 채무자 본인의 수입 등으로부터 무리없이 변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 4) 담보부 여신의 이용시에는 담보가격이 하락하면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인터넷뱅킹 이용고객께서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인터넷뱅킹 이용시 유의 하여 주십시오.
- 6) 당행 임직원은 유·무선상 고객님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수수료

여·수신 수입 수수료

1) 수신업무수수료

구 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 제 대 상
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당사양식 건당 1,000 원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나.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제사고, 변경신고 및 재발행	면 제	
다. 현금카드,통장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통장재발급 1,000원 카드1매당 1,000원	
라 인감변경시	통장당	1,000원	

2) 여신부문수수료

- 주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과 금융기관 상호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금융거래 확인에 따른 제 증명서 발급시

구 분	대 상 항 목	징수시기	징수금액(건당)	면 제 대 상
1.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부채잔액증명서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	증 명 서 발 급 시	본인확인용 - 1,000원 법원제출용 - 5,000원 은행조회서 - 10,000원	주1) 참조
2. 담보변경	-담보해지·교체 조건변경신청서	조건변경 실 행 일	등기실비	
3. 담보조사	-담보물추정시가 조사	대 출 금 취 급 일	면 제	
4. 신용조사	-신규조사 및 정기조사	대출실행시	-	
5. 수금비용	- 일수대출	수 금 시	면 제	
6.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금 기한전 상환시	기 한 전 상 환 시	담보대출(3년 이내 1.0%~2%) 신용대출(3년 이내 1.0%~2%)	

3) 타행환수수료

구			분	1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송금수수료 (무통장, 계좌이체)			당행	면 제		
			타행	500원	1,000원	2,000원
CD 업무 수수료	현금 인출	영업시간 이내	당행	해당사항없음		
			타행	해당사항없음		
		영업시간 이후	당지	해당사항없음		
			타지	해당사항없음		
CMS 업무수수료			면 제			

4) 계좌이체수수료

(단위 :원)

기준금액	저축은행간 이체		CD공동망 이체	
	당지수수료	타지수수료	당지수수료	타지수수료
100,000이하	0	700	800	800
500,000이하	0	900	1,000	1,000
1,000,000이하	0	900	1,000	1,000
3,000,000이하	0	900	1,000	1,000
5,000,000이하	0	900	1,000	1,000
7,000,000이하	0	900	1,000	1,000
10,000,000이상	0	900	1,000	1,000

5) 추심수수료

구 분	당 지	타 지
500만원이하	無	無
1,000만원이하	無	無
1,000만원초과	無	無

*** 담보대출관련 수수료 세부내역(LTV 기준)**

대 상	취급수수료율	중도상환수수료율	기타
일반담보대출	무	2%이내	계산식
아파트 담보대출		2%이내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 료율*잔여만기일수/약정대출 기간일수

*상기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감액 및 면제할 수 있다.

42. 주요용어해설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상호저축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BIS금융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산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에 따라 자기자본 보유를 의무화하는 “자기자본 측정과 적정 자기자본 수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의 하나로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은 5%입니다.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2) 업무이익(총당금적립전이익)

업무이익(총당금적립전이익)은 총수익에서 제경비 등을 차감한 이익으로서 저축은행의 영업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 업무이익(총당금적립전이익)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제충당금환입액 + 제충당금전입액(대손상각비,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퇴직급여, 기타충당금전입액)

(3) 유동성 비율

단기조달자금에 대한 단기자금운용을 표시(상호저축은행의 지급능력)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 / 유동성부채) × 100

* 유동성자산 : 현금,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예치금, 정상분류 대출채권중에서 3개월 이내 만기도래액(콜론 포함),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유가증권[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유가증권·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은 시가평가후 포함]의 합계액. 단, 요주의 이하 분류대상 자산은 제외

* 유동성부채 :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예수금,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차입금(경영정상화장기차입금 제외),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사채, 콜머니, 만기없는 예수금 직전 1년간 평잔의 30%의 합계액

(4) 유형자산 비율

상호저축은행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 취득액과 자기자본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43. 감사보고서

44. 재무상태표

45. 손익계산서

46. 자본변동표

4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8. 현금흐름표

49. 주석사항

*43~49는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로 대체합니다.